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20가단 배당이의  
원 고 김제시  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301호(만성동, H타워)  
(송달영수인 전종필)

피 고 전주시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

## 주 문

1. 전주지방법원 2010타경 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. 11. . 작성한 .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,0 원을 하고, 원고에 대한 배  
당액 1,6 원을 5,6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.
2. . . . 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

\_\_\_\_\_